

특별한 우리아이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Part 27. Guardianship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성인연령 (만 18세)에 가깝거나 이미 성인이 된 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또 하나의 주제 Guardianship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 자녀들의 법적 보호인의 자격을 가지며 자녀들에 관한 모든 (교육적, 재정적, 건강 관리 등) 결정권한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18세가 되는 순간 자녀는 법적으로 독립하며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므로 Guardianship이나 Power of Attorney 등 자녀의 결정 권한을 조정하는 수단이 없이는 부모가 장애자녀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자라고 해서 무조건 Guardianship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Guardianship이란 법정 절차를 통해 장애자녀의 신상에 대한 (Guardian of the person) 또는 재산 관리에 대한 (Guardian of the property or Conservator)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Guardian of the person은 일반적으로 medical care, 주거, 음식, clothing 등 일상 생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Guardian of the property는 장애자 소유의 재산에 연류된 결정권을 갖습니다. 동일인이 두 가지 Guardian 역할을 모두 담당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두 사람이 각각 한 가지 Guardian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co-guardian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가 처음 Guardian 역할을 하지만 부모가 모두 Guardian 역할을 할 수 없을 시기에 대비하여 차후 Guardian 역할을 할 사람을 유서와 같은 서류에 미리 임명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Guardianship은 법정에 petition을 내어 공식적으로 성인 장애자녀가 자신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 받고 보호인에게 성인자녀의 결정권을 이임하는 것이므로 일단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인자녀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큰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Guardianship은 다른 모든 방법을 고려한 이후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Guardianship이 과연 우리아이에게 필요한가를 판단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관해 얼마만큼의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 능력은 일상생활의 능력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생활, 누구의 의견을 신뢰 하는지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아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문제를 해결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따르고 싶은 가 등을 판단하고 표시할 능력이 된다면 장애자녀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Guardianship보다는

Power of Attorney와 같은 다른 방법을 권유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